산업통상자원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0. 11.(화) 11:00 < 10.12.(수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0. 11.(화)	
담당 부서	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호성 (044-203-5240)
		담당자	주무관	이동진 (044-203-5252)

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 가구당 평균 1.3만원 추가 인상

-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가구당 평균 18.5만원 에너지비용 지원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, **22년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.3만원 인상(17.2만원→18.5만원)**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.5만원 인상(12.7만원→17.2만원)한 바 있으나, 제2차 추경 이후 **전기·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.3만원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**하였다.

○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**10월 12일(수) 오전 9시부터**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는 다음과 같다.

< 가구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>

(단위: 원)

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이상 가구
변경 전	137,200	189,500	258,900	347,000
변경 후 (10.12~)	**148,100 (+10,900)**	**203,600 (+14,100)**	**278,000 (+19,100)**	**372,100 (+25,100)**

□ **에너지바우처**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**전기, 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**하는 사업이다.

○ **지원대상**은 **현행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·의료급여 및 주거·교육급여(22년 한시) 수급세대 중 노인, 장애인, 영유아, 임산부,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이 포함된 세대**로 총 117.6만 가구이다.

○ 에너지바우처는 **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**하며, **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**과 **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**으로 이용 가능하다.

- **국민행복카드**는 **전기, 도시가스**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(한전, 도시가스사)에 직접 카드결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, **등유, 연탄, LPG**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(판매소)에서 사용이 가능하며,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하여야 한다.

- **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**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, 아파트 거주자,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, **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**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.

○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**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** 또는 **복지로 포털(www.bokjiro.go.kr)을 통해 신청 가능**하다.

□ 보다 자세한 내용은 **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에너지바우처 콜센터(☎1600-3190)** 및 **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(www.energyv.or.kr)**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1 20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

□ **사업개요** :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**냉·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**에 필요한 **전기·도시가스 등 에너지의 구입비용**을 **에너지바우처로 지원**

□ **지원대상** : **「소득기준」**과 **「세대원특성기준」**을 **모두 충족**하는 세대

○ **소득**기준 : **"생계·의료" 및 "주거·교육(22년 한시)" 급여** 수급자

○ **세대원특성**기준 : **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**이 다음 **어느 하나에 해당**

- **노인** (주민등록기준 1957.12.31 이전 출생자)
- **영유아** (주민등록기준 2016. 1. 1 이후 출생자)
- **장애인** (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)
- **임산부** (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)
- **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** (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중증질환[별표3], 희귀질환[별표4], 중증난치질환[별표4의2]을 가진 사람)
- **한부모가족** 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)
- **소년소녀가정** (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)

□ **지원금액** :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(22년 한시 인상)

(단위: 원)

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이상 가구
변경 전	137,200	189,500	258,900	347,000
변경 후 (10.12~)	**148,100 (+10,900)**	**203,600 (+14,100)**	**278,000 (+19,100)**	**372,100 (+25,100)**

*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

□ **신청기간** : 2022. 5. 25. ~ 12. 30. ※ 주거·교육급여 대상은 '22.7.1일부터 신청

□ **사용기간** : **(하절기)** 22. 7. 1. ~ 9. 30. **(동절기)** 22. 10. 12. ~ 23. 4. 30.

□ **지원절차**

○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가 **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** 또는 **복지로 포털**에 **신청**(5~12월)

○ 지원 대상가구는 **국민행복카드*로 전기·가스 등을 직접 구매**하거나, **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차감하는 방식**으로 **바우처 사용**

* 국민행복카드 : 에너지바우처 등 17종의 국가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(보건복지부)

참고 2 2022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

